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학대)

< 입소노인의 존엄성을 보장, 노인 학대에 대한 철저한 예방을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개념과 법적근거, 신고방법, 종사자 수칙 등을 마련하여 전 직원에게 노인 학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인식 시키고자 한다.>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지침

- 본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 본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 본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 어르신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시설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 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본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한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 ①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③ 장애인 복지법 제 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④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 ⑤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신고 및 상담전화

- 일반전화 이용 : 1577-1389 / 129
 - 해당지역에 위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
- 인천 지역 신고할 때 : 032-426-8792
- 내방 및 서면신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시사회복지회관 204호
- 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접수
 - <http://www.ic1389.or.kr>

노인학대 신고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노인복지법 제 39조의6제3항)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안전한 노후를 위한 지지적 환경을 조성하며 노인에 대한 차별해소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앞장서는데에 의의가 있다.

1. 학대받는 노인 및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 전문적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 가족역량강화 지원 등
2.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상자별 교육 : 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체계 안내 등
3.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 : 노인학대 인지도 확산, 홍보활동, 제도개선 노력 등
4. 안전한 노후를 위한 지지적 환경 조성 :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 등

사업내용



▶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유형)와 증상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상 및 고통장애를 유발
 - 주먹으로 때리고 밀어서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인 학대를 가한다.
 - 침대 등에 묶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다.
 -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칼 등의 위험한 흉기로 위협을 한다.
 - 꼭 먹어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하거나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한다.
 - 강제로 일을 강요한다.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고향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말이나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 이성교제, 사회활동 등을 방해한다.
 - 주요 결정에서 소외시키거나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3. 성적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 등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
 -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을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4. 경제적 학대 :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는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허락 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재산을 가로채는 등의 피해를 준다.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적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 스스로 식사, 배변처리, 청결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하며 처치하지 않고 간병을 소홀히 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지원하지 않으며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

(자기 방임 : 의료적 치료행위 거부, 돌봄 및 생존 관련 행위 거부하여 생명 위협, 알코올 남용 및 자살시도 등)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
 -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
 -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학대 대응(신고)

1) 신고대상

① 학대피해노인

-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응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타인

-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2) 신고의무자

①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의 료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② 재가복지시설 장 및 그 종사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④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⑤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신고시기

- ①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방법

- ①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588-1389 운영
- ②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 ③ 직접 방문 상담 접수
- ④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 ⑤ 서신에 의한 접수
- ⑥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5) 신고자의 권리

- ① 노인복지법제39의6 -1항: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3항 :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노인복지법제39조의11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 노인학대 사례 발견 시

- 1) 학대 또는 방임으로 인한 손상과 후유증에 대해 진단 및 치료를 행해 더 이상 심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 2) 노인학대로 의심되면 반드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 3)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또는 증언 진술을 위해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시행하며 증거물 및 기록을 남깁니다.
- 4) 정기적인 노인학대 관련 교육에 참여합니다.
- 5) 필요한 경우, 학대사례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등 노인학대 문제해결에 협조합니다.

학대피해노인 대처방안

•응급 상황



* 피신할 때 가져갈 물건 : 현금, 신분증, 인감, 카드, 약

•비응급 상황



▶ 노인학대 처벌 규정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 기준)

-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인 신분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의무 위반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 방해한 자 :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인권

1)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2)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시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